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2. . . (제 회)	

국 가 보 훈 처 와 그 소 속 기 관 직 제
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전해철 (행정안전부 장관)
제출 연월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가보훈처에 국립묘지 조성 및 확충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증원한 인력 1명(5급 1명)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국가보훈처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2. 1. 0. ~ 1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

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조제2항을 삭제한다.

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5]

국가보훈처 공무원 한시정원표(제29조 관련)

제29조제1항 관련 한시정원(존속기한: 2023년 2월 28일)

총계	1
일반직 계	1
5급	1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9조(한시정원) ① (생 략) <u>② 국립묘지 조성 및 확충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「행정 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 칙」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2 년 2월 28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가보훈처에 둔다.</u>	제29조(한시정원) ① (현행과 같 음) <u><삭 제></u>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	
연 락 처	(044) 205 - 2366